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539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	3
2. 예술인 권리보장·복지증진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9
3.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 시책 마련(안 제15조, 제15조 의5 및 제15조의6 신설)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8. 11.
3. 회 부 일 : 2026.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마.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III. 검토의견

1.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하고(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안 제4조의3),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4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한 사항 5.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과 향유 기회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각종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모범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실질적 의미의 기본법 역할

을 해왔음.

비록 2014년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문화기본법」은 문학, 미술, 대중음악을 제외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으로 대표되는 순수예술 또는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고 기본법의 특성상 문화¹⁾에 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므로, 기초예술 또는 순수예술의 진흥 및 육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은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총칙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기본법의 구성체계에 포함되는 조항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과 관련된 조항 등을 신설하고 있음.

안 제4조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다른 법

1)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개별 법률이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해석·집행상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안 제4조의3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안 제4조의4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이 다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계획보다 우선하여 그 계획의 기본이 됨을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서, 문화 예술 창작 및 문화산업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진흥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의 기본방향이 문화기본법 제8조2)에

2) 「문화기본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일부 포함된 상황이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별도로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창작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³⁾가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영화진흥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도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보다는 영화진흥위원회 유사한 위원회 조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은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문화예술 분야 중 공연, 미술, 국악 등 일부 장르는 개별법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⁴⁾하고 있는 분야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술진흥법」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악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예술인 권리보장·복지증진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며(안 제10조),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며(안 제10조의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3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3장 <u>문화예술복지의 증진</u>	제3장 <u>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예술복지의 증진</u>
<신 설>	제10조(예술인의 권리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예술인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문화시설,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실질적 의미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와 같이 문화예술 진흥 관련 각 세부적 분야의 시책 마련과 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할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특히,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시책 마련에 대해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⁶⁾이,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법」⁷⁾이,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

5) “특히 하나의 법률은 그 법률이 규율하려는 대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당 법률이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이어서 각 분야별로 별도의 법률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와 같이 기본이 되는 법률과 다른 법률을 서로 연결하는 규정을 두게 됨.”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4, p.27.

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관하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⁸⁾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이후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겨난 법률인 만큼 해당 내용이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한 분야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별법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었고, 신설 조문은 개별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 시책 마련(안 제15조,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의5), 문화예술 영재 발굴·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5조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창작 공간 및 환경 조성 2.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작·유통 및 보급 지원 3. 우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창작물의 발굴·육성 4. 문화예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5(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체계적·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신설하고 있는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및 창작물의 제작·유통·보급 지원 등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영재의 발굴 지원 업무는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예술 진흥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임.

개정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 현황 >

구분	사업수행 기관	세부사업 내용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안 제15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지원,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역예술 지원
문화예술 진흥 전문인력 양성(안 제15조의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후원 매개 인력 양성, 예술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예술영재 발굴 지원 (안 제15조의6)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서울 본원, 세종· 광주·통영 캠퍼스) 운영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5조의5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 제6조⁹⁾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 제6조의 삭제나 개정 없이 제15조의5를 신설하여, 현행법 제6조와 중복되는 부분

9)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있으므로,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 제6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15조의6에 대하여 교육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예술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바¹⁰⁾, 법률 간의 정합성 고려 및 현장의 혼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 제15조6제2항에 “다만,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설립 및 설치에 대해서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른다”와 같은 단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신설하며 개정안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창의적 사고 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222008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